

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

1 목적

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지원되는 농업분야의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종합 지원하고 시설 개보수자금과 운영자금을 통합 지원

대출취급기관이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자금대출후 사후관리까지 일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성 제고

« 2001년에는 농축산경영자금 중 전업경영체 지원자금인 농기업경영자금, 축산전업경영자금을 농업경영종합자금과 연계 운용

- 재원조달의 방법은 현행대로 하되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원토록 함으로써 자금지원의 효율성 극대화

1) 지원대상자

« 원예특작 축산분야 재배 생산에 종사중이거나 신규로 종사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소정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분야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영체

- 시설 개보수 운영자금 지원

« 농기업경영자금, 축산전업경영자금 연계운용에 따른 지원대상(시설자금은 지원하지 않음)

- 쌀분야 : 쌀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
- 원예특작 축산분야 유통 가공 저장사업 : 정책자금(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 포함)을 지원받은 시설로 사업중인 농업인, 농업법인 기타 일반 사업자

- 경주마 사육 축산농가

-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사업자

※ 영농규모, 연령, 영농종사기간과 관련한 제한은 없으며 대출취급기관이 자율적으로 평가기준에 반영

※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기록 또는 재무제표(1년이상) 제출 대상

- 농업법인, 신청시점 현재 종합자금 신청금액을 포함한 금융기관 대출잔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농업인

2) 지원조건

« 지원자금의 종류

- 원예특작 축산분야 : 시설 개보수 자금과 운영자금을 종합 지원
- 기타 분야 : 개보수 운영자금만을

2 시책 및 추진방향

« 농업경영체가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체의 자율성을 존중

« 대출취급기관이 경영분석을 통하여 대출여부와 대출금액 대출방법을 결정하고 자금지원과 컨설팅을 병행

« 농축 삼협이 사업수익성 재무구조 평가 등 경영분석을 통하여 자금을 대출하고 자금대출후에는 경영실태 점검등 사후관리도 일관 담당

« 전문적인 경영분석 또는 기술지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의 자체 컨설팅부서 혹은 외부 전문컨설팅기관 활용

«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금지원

- 시설 개보수자금 및 운영자금을 일괄 지원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금액을 필요한 시기에 지원

- 사업발전단계별로 경영평가를 거쳐 추가지원을 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단계적 경영발전 지원

3 균거법령

« 농업 농촌기본법

- 제11조(가족농의 경영안정), 제13조(전업농법인 육성), 제15조(영농조합법인의 육성), 제16조(농업회사법인의 육성), 제17조(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)

4 2001년도 지원계획

▪ 2000 사업비 (단위: 백만원)

- 국고용자 128,500, 대출기관용자 32,000, 합계 160,500

▪ 2001 사업비 (단위: 백만원)

- 국고용자 148,500, 대출기관용자 37,000, 합계 185,500

※ 원예특작과 축산 등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지원

※ 참고 : 농기업경영자금 6,500억 원(잠정), 축산전업경영자금 2,650억 원(잠정)

5 사업시행요령

가. 사업내용

지원

- ※ 2001년부터는 운영자금만 단독 지원도 가능
- «지원조건**
 - 금리 : 연리 5.0%
 - 상환조건
 - 시설자금 3~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
 - (*) 인삼 식재 시설자금은 연근별로 3~5년 거치 일시상환
 - (*) 원예특작은 3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
 - 축산 및 철골(유리 혹은 경질)온실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
 - 개보수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
 - 운영자금 2년 이내 상환
- «자금용도 : 상세한 것은 [6. 세부사업내용] 참조**
 - 시설자금 : 생산 재배시설, 저장 유통 가공시설 및 증축자금, 토지매입 자금, 사업비 20백만원 이상의 에너지 절감시설, 온실기능향상시설 등
 - ※ 저장 유통 가공시설은 생산시설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
 - [예시] 농가가 생산시설에 부수하여 소형 저온저장고만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지원 가능
 - ※ 토지매입자금은 사업목적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지원
 - (세부사항은 부록 : 토지매입자금 지원관련 세부지침 참고)
 - ※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제한
 - 지목상 '답'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 - 택지 도로 땅 공단조성 등 해당 토지의 농업 목적 이용과 다른 목적의 개발계획이 고시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기반으로 활용되며 어려운 토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(☞ 참고2)
 - 농림분야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토지를 재구입하는 경우 지원

제외

- 노지경작용지 농지이외의 토지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지원제외(토지에 시설설치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)
- 사료생산기반은 사료포의 경우만 지원
- 개보수자금 : 기존 시설의 개수 보완 및 기계 장비구입에 필요한 자금(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 경과시 추가 시설지원 가능)
- ※ 변식용 한우암소 및 쪽유우(한우, 쪽유우 모두 암송아지, 육성우만 해당)는 고정자산으로 간주하여 개보수자금에 준하여 지원
 - 운영자금 :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
 - ※ 토지임차자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중장기, 단기자금으로 지원가능
 - ※ 가축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제주도 교집우 한우대체시에는 지원 가능
- «지원한도 :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20백만원 이상(상한액 없음)**
 - ※ 20백만원에 미달하는 소액 시설 설치자금(에너지절감시설, 온실기능향상시설 포함)은 개보수자금으로 지원가능
 - ※ 토지매입자금은 토지가격에 관계없이 평당 35,000원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관인계약서상 실제거래가격에 따라 지원
 - 관인계약서상 시가가 인접토지와 가격차이가 클 경우에는 대출기관에서 평가하여 하향 조정 가능
 - 규모한도 : 농지는 300평 이상(시설용 농지는 100평이상)

나. 사업추진체계

- 1) 대출취급기관 : 농업협동조합중앙회
- 2) 농업경영종합자금취급사무소(이하 "취급사무소")
 - «농협 시 군 지부등 중앙회 소속 각급 사무소**
 - «농협중앙회장이 지정한 지역농축협, 품목별 업종별 조합(이하 회원조합)**
 - ※ 각 취급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원예특작 축산을 구분하지 않고 대출업무를 취급함
 - ※ 대출취급승인을 얻은 회원조합에 대해서는 중앙회 및 해당 조합에서 수시로 별도 공고하며 각사무소에는 [농업경영종합자금취급사무소]라는 표지를 부착
 - 3) 취급자금
 - «농업경영종합자금, 농기업경영자금은 원칙적으로 전분야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축산전업경영자금은 축산분야에만 지원**
 - 4) 자금운용부서 : 농림부 협동조합과 (02-500-1697)
 - 5) 사업담당부서 :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 (02) 500-2683~4
농산물유통국 과수화훼과 (02) 500-2685~6
축산국 축산정책과 (02) 500-2688
 - 6) 대출기관 연락처
 - «농협중앙회 : 농업금융부 농업경영 종합자금추진단 (02) 397-6533~39**

- 시 도지역본부 : 정책자금 담당과
- 시 군자부 : 농업금융 담당과
« 회원조합(별도 공시) : 정책자금 담당자

다. 자금지원결정

1) 사업신청

« 사업희망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취급사무소에 신청

- 취급사무소가 아닌 농축 삼협은 신청서류를 해당 취급사무소로 이첩

*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서식등은 취급사무소에서 안내하되 행정 기관에도 비치 안내하여 농업인 편의도모

* 사후관리 및 점검 평가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하여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신청이나 대출약정체결시 정보제공동의서 제출

« 신청시기 : 연중 수시

2) 자금지원결정

« 종합자금취급사무소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수익성 등 경영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하여 자금지원 결정

- 농축 삼협은 사전에 지역농업발전계획이나 지역특화시책, 권장품목 등 종합자금제 실시에 대해 시·군과 사전 협의

- 사업계획서에 대한 대출적격여부, 대출금액 및 대출방법을 결정한 후 인허가 등 행정사항, 기술검토사항 기타 해당 경영체의 평판 신망 등에 관하여 및 해당 시·군의 의견을 요청

* 운영자금이나 20백만원 미만의 개보수자금 신청의 경우는 시·군 의견 조회를 하지 않음

« 취급사무소는 종합자금 지원상황을 수시로 해당 시·군청에 통지(서식1)
- 시·군청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존 정책자금지원상황과 사업취소, 추가 지원 등 변경사항을 농축 삼협에 통지

3) 심사방법

« 사업계획서 심사시에는 이 지침과 농협중앙회의 세부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내용과 사업타당성을 검토 분석(재무 경영평가 포함)한 후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

« 토지매입자금의 경우는 전체 사업계획에 비추어 토지매입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시장·군수의 의견을 청취

〈종점평가 항목〉

-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수익성
-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
- 재무구조의 건전성

〈신용평점 평가시 우대 혹은 가점 부여 고려사항〉

-농작물재해보험, 기축공제 가입 농가

-친환경농산물 표시농가(품질인증 등)

-신지식농업인, 새농민상 수상자

-가축질병예방활동 참여 우수농가

-품질개선노력 : 규격분생산, 거세 축생산, 종축등록생산, 우수축출하, 1등급 원유생산 등

-기타 : 집유일원화 참여, 축산분뇨 자원화 처리 등

« 사업신청자가 희망하거나, 대상품목(축종) 또는 경영기술등이 농축 삼협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신청자와 협의하여 농촌지

도기관이나 기타 전문기관의 경영컨설팅을 받도록 함

-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탈락사유를 설명하고 보완사항이나 추가준비사항 등을 안내 및 지도

« 농업기술센터, 도·농업기술원, 기타 농업기술관련 정부연구소는 농·축·삼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·경영능력 및 사업계획서상의 기술사항에 대한 타당성 평가 결과를 제공

〈농업경영컨설팅사업 추진상황〉

- 농·농업경영컨설팅운영지원사업(지도계통 컨설팅, 농촌진흥청 주관)

· 157개 시·군 농업기술센터의 기초컨설팅팀과 9개 도·농업기술원의 광역컨설팅팀 운영중

-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(민간컨설팅, 농림부 9개도 주관)

. 2001년 예산 : 국고·지방비 20억원, 자부담 50%

- 농림부, 농촌진흥청 및 각 시·도는 소관 컨설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인력, 전문기관에 대한 정보를 농업인과 일선취급사무소에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

· 각 개인 기관 회사별로 전문분야, 컨설팅실적, 주요 경력 등

* 2001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기업경영자금, 축산전업경영자금과 관련하여 기존에 대출받은 경영체가 재대출이나 대환을 통해 자금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 대출에 한하여 [농업경영종합자금세부시행지침]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존의 [2000년도 농기업경영자금 대출업무방법], [2000년 축산전업경영자금세부집행계획]에 따라 심사함

- 다음호에 계속 -